

세부사업명	공익기능증진직불			세목	민간·자치단체 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선택형 공익기능증진직불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예산 (백만원)	4,943			
사업목적	- 축산농가의 저탄소 영농 활동 지원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							
사업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부문 저탄소 기반 실현을 위한 저메탄·질소저감사료 급여에 따른 활동비 지원 * (저메탄) 소사육 농가가 저메탄사료 급여시 두당 2.5~5.0만원/년 지원 * (질소저감) 돼지사육 농가가 질소저감사료 급여시 두당 0.5만원/년 지원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중립기본법」 제45조(농림수산의 전환 촉진 등)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7조(지구온난화 방지 등)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 강구) 							
지원자격 및 축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대상 농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자 - (지급대상 축종) 한육우, 젓소, 돼지 							
사업 신청	-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축산업 허가증 소재지 시·군·에 신청							
지원대상 선정	- 지원자격 및 요건(대상자)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이행점검을 거쳐 활동비 지급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정준구 사무관 신혜선 주무관		044-201-2353 044-201-2363		
축산환경관리원	환경친화부			이정식 부장 이준희 팀장		044-550-5050 044-550-5061		
신청시기	(저메탄) 4~5월 / (질소저감) 8월			사업시행기관	지자체, 축산환경관리원			
관련자료	사업시행지침 참고							

□ 목 적

- 저탄소 영농활동 활성화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기여

□ 사업내용

- 농업인의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 지급

□ 지원 자격 및 요건

-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함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 지급

- 지원 기준 : 국비 100%

- (저메탄사료 급이, 한육우) 2.5만원/두/년

- (저메탄사료 급이, 젖소) 5.0만원/두/년

- (질소저감사료 급이, 돼지) 0.5만원/두/년

- '24년 예산 : 4,943백만원(국비 100%)

□ 사업 신청

- 신청 자격을 갖춘 농업인·농업법인이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갖추어 농업인·농업법인 소재지 시·군에 신청

- (신청기간) '24. 4. 1. ~ 4. 31.

- (신청장소) 농업인·농업법인 소재지 시·군 사업담당과

□ 대상자 선정

- 농식품부는 시·도별 수요조사에 따른 사업량을 확정하여 시·도에 배정(3~4월)하고, 시·도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모집(4월)

* 시·도별 사업량은 사업 전체 물량의 일정 범위(약 50%수준) 내에서 배정하되, 시·도 배정량 외 잔여물량(50%)를 고려하여 배정물량과 상관없이 신청·접수

- 축산환경관리원은 AgriX 신청자료를 토대로 결격사유를 검토하여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농식품부는 최종 사업대상자를 시·도에 통보(5월)

- 사업신청자가 시·도별 배분 물량을 초과할 경우, 잔여물량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 및 지자체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자 조정·선정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사무관 정준구	044-201-2353
		주무관 신혜선	044-201-2363
축산환경관리원	환경친화부	부장 이정식	044-550-5050
		팀장 이준희	044-864-5061

1. 신청인 자격요건

☑ ①「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고, 저탄소 영농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②한육우, 젓소 또는 돼지를 사육 중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① 사업 신청일 기준 신청인 자격요건에 부합하며, 축산업에 종사(일부 위탁경영* 포함)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위탁경영(축산계열화사업 등) 시 직접 저메탄사료, 질소저감사료를 구매하고 실제 사육을 하는 위탁받은 농가(계약사육농가)만 신청 가능

** 위탁농가(축산계열화사업자)가 사료구매대금을 지급하고 위탁받은 농가가 사육 시 위탁농가 신청 불가

② (자격요건)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고, 저메탄사료 및 질소저감사료 급이 대상 축종(한육우, 젓소 또는 돼지)을 사육 중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허가 기준: 가축사육업의 사육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m²)를 초과하는 경우 등

☑ 다만, ①축산업 허가 취소, ②유사 사업 참여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제외

① 사업대상자 확정 이전에 「축산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가 취소되었거나 1년 이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당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② 유사 사업*에 참여하여 동일 활동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지원(보조금, 배출권 등)을 받고 있는 경우

* (유사사업)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등

* (동일활동) 저메탄사료 급여, 질소저감사료 급여

- 단, 저탄소 인증 취득을 위한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사료구매자금(융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에 중복 참여 가능

* (예) 저탄소 인증 취득 지원을 하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지원사업 등은 중복 참여 가능

2. 지원대상 활동 및 단가 등

☑ 참여대상 농업인·농업법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활동 이행에 대한 점검 후 활동별로 이행활동 비용을 산정하여 지급

①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지원대상 활동 및 지급단가는 다음과 같음

《 지원대상 활동 및 지급단가 》

분 야	활동명	주요 내용	단가
축산	저메탄사료 급여	▶ 반추가축에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2조에서 정하는 저메탄사료를 먹이는 활동*	한육우 2.5만원/두
		* 한육우는 농장에서 사육하는 비육우 전체 에, 젖소는 착유우 전체 에 급여(한육우는 번식우도 참여 가능)	젖소 5.0만원/두
	▶ (증빙방법) 휴대전화 웹을 활용하여 증빙사진 자료를 이행기간 내 제출(세금계산서, 구매내역서*, 활동사진 등)		
	▶ 구매내역서 : 사료 구매자 정보, 제품명, 구매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등		
	질소저감사료 급여	▶ 가축에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는 질소저감 사료를 먹이는 활동*	돼지 0.5만원/두
		* 농장에서 사육하는 돼지의 비육돈 생산 전 구간(이유돈, 육성돈, 비육돈) 전체 에 급여(모돈도 참여 가능)	
		▶ (증빙방법) 휴대전화 웹을 활용하여 증빙사진 자료를 이행기간 내 제출(세금계산서, 구매내역서*, 활동사진 등)	
		* 구매내역서 : 사료 구매자 정보, 제품명, 구매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등	

○ (급여원칙) 농장 내 해당 구간 두수에 전체 급여를 해야 함(일괄급여). 단, 축사동 또는 급여시설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해당 구간의 일부 두수만 급여 가능(부분급여)

* 사업대상자는 사업 신청시 부분급여를 증빙할수 있는 자료(축사급여시설 사진, 축사 도면도 등)를 제출, 사도는 사업 신청 접수 시 증빙자료 적절 여부 확인

② 지급금액 산정

○ 신청두수(두) × 지급단가(원/두/년) × 이행기간(년) × 감액기준(사료 실구매량, 증빙정도 등)

- 농장별로 참여하는 사육 두수에 지급단가와 이행기간을 곱하여 합산하되, 감액기준을 반영하여 10원 미만 절사 후 농장별로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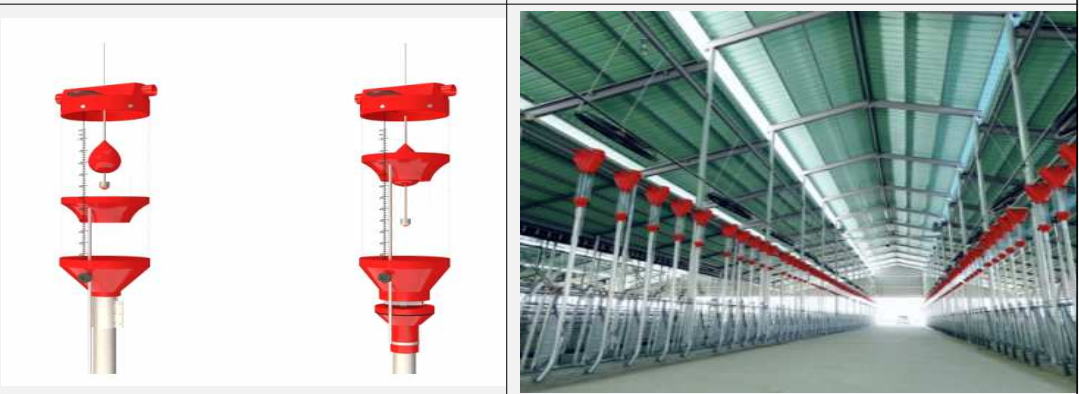
- (신청두수) 신청일 기준 축산물 이력제(소), 가축재해보험(돼지) 상의 사육두수
- * 사업신청 시 사도 담당자는 (소)농장식별번호를 조회하여 축산물 이력정보시스템상 사육두수 또는 (돼지)농가가 제출한 보험증권상의 가입두수를 확인하여 신청두수와 일치 여부 확인(참고 1 참조)

** 신청두수가 이력제, 가축재해보험 상의 사육두수를 초과할 경우 사육두수를 신청두수로 작성

- ③ 지원재원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공익증진기금)
- ④ 지원형태 : 국고 100%, 선정 후 1년 지원
- ⑤ 지원기간 : 선정 후 이행점검 완료 시점까지

○ '24년의 지원 기간은 '24.6.~10.말에 해당함(지원기간은 월단위로 산정)

《 부분급여 축사 예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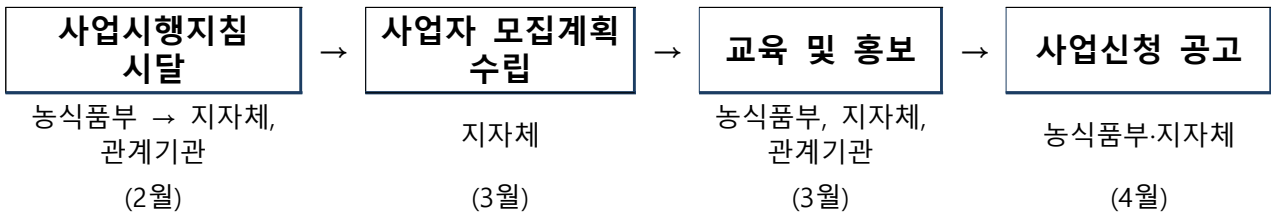
<p>축사 분리</p>		
<p>(축사 분리) 사육시설이 구분된 경우(시설별)</p>		<p>(축사 분리) 사육시설이 구분된 경우(시설 내)</p>
<p>급여 시설 분리</p>		
<p>(급여 시설 분리) 사료자동급이기 설치 시 급이기별 개폐장치가 장착된 경우</p>		

II

사업추진체계 및 절차

집행 과정	시기	시행주체	주요 내용
①신청·접수 전	1~3월	농식품부 축산환경관리원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지침 시달 ▶ 지자체 업무담당자 및 사업관계자 등 교육 ▶ 농업인·법인 대상 자격요건, 신청·접수 등 공고 ▶ 사업 교육·홍보 및 신청·접수계획 수립·실시
↓			
②신청·접수	(1차) 4월 (2차) 8월	농업인 등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신청(농업인·법인 대표) 및 접수(시·군) ※ 1차는 저메탄사료에 한정, 2차는 질소저감사료를 추가하여 신청·접수 * 시·군은 사업대상자 요건 검토 후 AgriX시스템 전산입력
↓			
③선정 및 등록증 발급	(1차) 5월 (2차) 9월	농식품부 축산환경관리원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자 선정·통보(축산환경관리원·농식품부 → 시도 → 시·군) ▶ 사업대상자 교육 실시 (축산환경관리원 → 지자체 등 → 관내 농업인)
↓			
④활동 이행	6 ~ 10월	농업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활동 이행 및 활동별 증빙서류 제출 (농업인·법인 → AgriX시스템 등록) * 서면점검용 모바일 웹 내 활동 증빙자료 등록
↓			
⑤이행점검	6 ~ 10월	축산환경관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별 증빙서류 확인 및 현장 이행점검 * 자격요건 검증, 유관기관 DB 및 AgriX 시스템 활용 ▶ 이의신청 및 재조사
↓			
⑥지급액 산정	11 월	농식품부 축산환경관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행점검 결과 및 활동비 산정 결과 보고 (축산환경관리원 → 농식품부) ▶ 이행점검 결과 및 활동비 산정결과 통보 및 확인 (농식품부 → 시·도 → 시·군 → 농업인 등) * 준수사항 미이행 등으로 인한 감액대상 점검·확정
↓			
⑦이행비 지급	12월	농식품부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비 교부요청(시·군 → 시·도 → 농식품부) ▶ 활동비 교부결정 및 교부 (농식품부 → 시·도 → 시·군 → 농업인 등)
↓			
⑧사후관리	연 중	농식품부 축산환경관리원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시스템 운영 및 부정수급 조사·단속 등 * 콜센터 운영 및 시·군 신고센터

1.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접수 전 단계(1~3월)



① 사업시행지침 시달 농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 및 축산환경관리원 등 관계기관에 시달

② 시·도별 사업자 모집계획 수립 지자체

- 시·도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사업대상자 모집계획 수립[별지 제1호서식]
- * 시·군별 물량 배정을 위한 계획 수립 등

③ 지자체 업무담당자 교육 축산환경관리원

- 축산환경관리원은 지자체 업무담당자(시·도 등) 대상 권역별 순회교육 실시
- 시·도 업무 담당자는 시·군 업무담당자가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자격요건 검토, 전산입력 사항 등이 원활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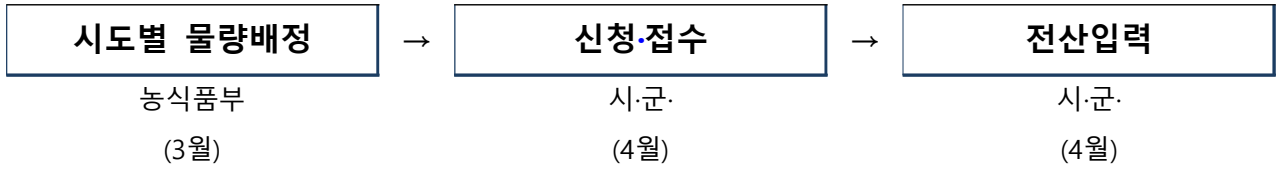
④ 사업신청 홍보 농식품부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축산환경관리원

- 시·도는 농업기술센터, 축산환경관리원 등과 협력하여 농가 대상 홍보 실시
- * TV방송, 지역언론, 새해영농실용화 교육, 현수막, 누리집 배너 등 활용

⑤ 사업신청 공고 지자체 축산환경관리원

-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접수일 7일 전까지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인터넷 등을 통해 신청 공고
- * 지급대상 축산농장, 사업대상자, 신청 기간 및 방법 등 신청에 필요한 사항
- ** 향후 홍보 미흡에 따른 민원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공고 실시

2. 사업신청·접수 단계(4월)



① 시·도별 사업대상 물량 배정 농식품부

- 농식품부는 시·도별 가축사육두수에 기반하여 물량 배분

② 사업 신청 농업인 등

- 신청 자격을 갖추어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대표는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갖추어 농장 소재지 시·군에 신청
- (신청기간) '24) 4.1. ~ 4.30.
 - 돼지의 경우 '24년 하반기 접수(질소저감사료 기준마련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신청장소) 농장 소재지 시·군 사업담당과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및 관련 첨부서류
 - * 그 밖의 등록신청 담당 공무원이 신청 자격 확인을 위해 증빙서류 추가요청

《 신청 시 주요 제출서류 》

구 분	비 고
I.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서	
II. 감액기준 동의서	
II. 축산업 종사하고 사료구매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1. 「축산법」 제22조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허가한 허가증(사본)	전산확인 가능시 미제출 가능
2. 전년도 사료구매 내역서	사료구매량 확인
3. (돼지) 가축재해보험 보험증권(사본)	돼지 사육농가만 제출
III. 부분급여 선택 시 증빙자료 제출	
1. 축사시설 또는 급여시설이 분리된 축사사진, 도면도 등	부분급여 선택 시 제출

③ 이행활동 선택 농업인 등

- 신청인은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와 감액기준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이행하고자 하는 축종에 대하여 이행활동을 선택·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④ 사업신청·등록 접수 **지자체**

- 시·군 담당자는 신청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토대로 참여 대상 축종, 농업인·농업법인 자격요건 해당 여부를 검토 후 접수
 - * 축산업 허가증 유효성(새울행정시스템), 신청인의 사육두수 및 신청두수 확인(이력정보시스템, 가축재해보험), 부분급여 가능 여부(축사구분 여부, 급이시설) 등 검토
-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우선 접수처리 하되, 추후 일정 기간(14일 이내)을 두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신청기간 내 추가 제출토록 조치(기간 내 미제출 시 사업대상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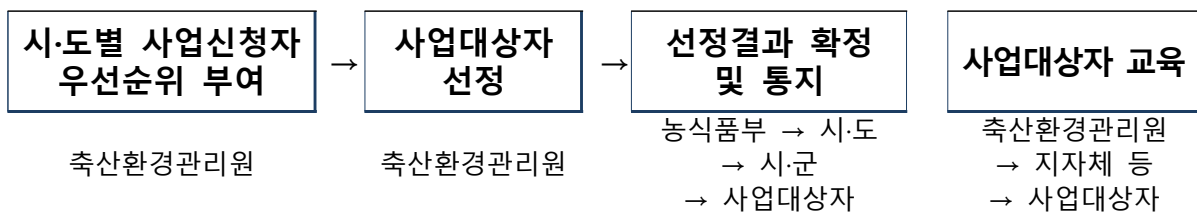
※ (등록 접수 시 유의사항) 활동비 수령자(법인·단체 소속 사업 참여 개별 농업인) 성명 및 계좌번호 확인 철저

- 활동비 신청자는 신청서 상 "수령자"와 동일해야 하며, 신청자 명의 계좌로만 입금 가능
- 신청인이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신청한 경우 접수증([별지 제4호서식]) 발급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대표 1인에 접수증 발급

⑤ 전산입력 **지자체**

- 시·군 담당자는 신청인의 적격여부 및 신청자격을 확인하여 사업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명되는 경우 AgriX 시스템에 전산입력 및 신청자 명단([별지 제5호서식])을 시·도에 제출
- (입력기간) ('24) 4.1. ~ 4.30.
 - 돼지의 경우 하반기 신청기간 확정에 따라 전산입력
- (입력내용)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에서 등록신청서 정보 입력

3. 사업대상자 선정 단계(5월)



① 시·도별 사업신청자 우선순위 선별 **축산환경관리원**

- 축산환경관리원은 지원자격 충족여부 검토 및 우선순위 기준에 따른 시·도별 사업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함

② 사업대상자 조정 및 선정 **축산환경관리원**

- 축산환경관리원은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대상자 조정 및 선정 실시
 - 시·도에 배분된 사업물량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 시·도 신청자수가 시·도 배정 물량을 초과할 경우, 전체 잔여물량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 시 우선순위 고려사항 》

○ (기본원칙) 사업에 참여하는 사육두수(이하 '신청두수')가 많은 경우 우대, 신청두수가 동일한 경우 일괄 참여 농가에 우대

<(예시) 우선순위 부여 방식>

구분	사육두수	급여방식	지급 신청두수	우선순위
㉠ 농가	400	부분급여	200	3
㉡ 농가	300	일괄급여	300	1
㉢ 농가	300	부분급여	100	5
㉣ 농가	200	일괄급여	200	2
㉤ 농가	200	부분급여	100	4

※ 우선순위 선정 고려사항: ① 지급 신청두수 → ② 급여방식 → ③ (지급신청두수/사육두수) 순으로 선정

* 사업신청 시 증빙자료(축산업허가증, 축산물이력제, 가축재해보험 등) 기준으로 산출

③ 선정결과 확정 **농식품부** **축산환경관리원**

- 축산환경관리원은 사업대상자 선정내역을 농식품부에 제출
- 농식품부는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통보

④ 선정결과 통보 **농식품부** **지자체**

- 시·도는 선정결과를 시·군에 통보
- 시·군은 사업신청자에게 선정 여부를 문자 등으로 알립
 - 선정결과 통지서에 사업대상자의 활동별 이행증빙 내용 안내
 - 선정되지 않은 농업인·농업법인 대표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선정 결과 통지 후 1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별지 제6호서식])

⑤ 사업대상자 교육 지자체 축산환경관리원

- 축산환경관리원은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일정계획에 맞춰 지자체와 권역별로 사업대상자 교육 실시
 - (내용) 사업개요, 활동 이행·증빙방법 및 사업 진행 절차 교육
 - * 탄소중립 프로그램 이행활동 및 이행점검 시스템 활용방법(접속 및 회원가입 등) 안내
 - (방법) 대면 교육 및 영상·매뉴얼 등 관련자료 배포 진행
 - * 「알기 쉬운 탄소중립 프로그램 활동 안내서(가칭)」 작성·배포

4. 활동 이행·변경·포기 단계(6~10월)

① 활동 이행 및 증빙자료 등록 농업인 등

- 선정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대표는 사업신청 축사에서 분야별 활동을 이행하고, 증빙자료를 이행점검 시스템에 등록
 - 시·군은 농업인·농업법인 대표가 정해진 시기에 이행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

<축산농가 준수사항>

- 축산농가는 해당사료를 사업대상자 선정 후 신청두수를 대상으로 급이하야 함
 - 농장 내 대상 축종 전체 참여(일괄급여)를 원칙으로 하되, 축사·급여시설 등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일부를 대상으로 참여(부분급여) 가능
- 저메탄사료, 질소저감사료(저단백사료) 급이대상
 - 저메탄사료(소): 농장에서 사육하는 송아지를 제외한 전체 사육두수(송아지 사료는 제외)
 - 질소저감사료(돼지): 농장에서 사육하는 포유자돈을 제외한 전체 사육두수(갓난돼지 사료 제외)
 -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기준이 신설된 성장단계는 모두 급이 가능
- ** 질소저감사료는 반드시 성장단계별 단백질 함량 기준안에 맞춰 급이

-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효과 분석을 위한 축산환경관리원의 사료 및 분뇨의 시료 채취(필요 시)에 협조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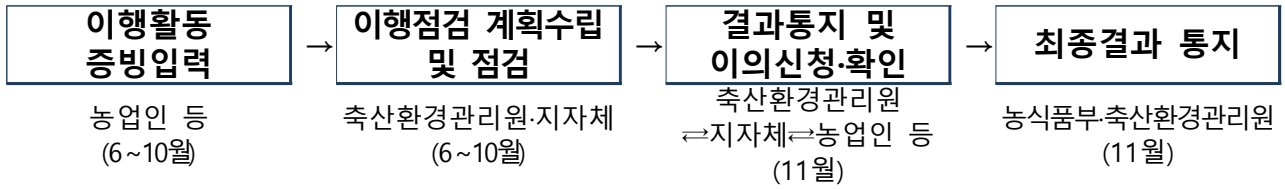
② 사업대상자 변경신청 및 신고 **농업인 등**

- 사업참여자(농업인·농업법인) 및 지급대상 축산농가의 요건이 변경되었을 경우 사업 변경신고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시·군청장에게 제출
- 사업참여자로 선정된 농업인이 사망(뇌사 포함)하거나 대상농장을 승계하였을 경우 승계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승계 가능
 - 승계자는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여 사업자 변경신청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승계
- 사업참여 농업인·농업법인의 대표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사업포기 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신청한 시·군에 제출

《 승계자격 요건 》

- 해당 축사에서 계속 축산업에 종사하는 등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 사유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한 농업인**
 - * 치료를 목적으로 등록자의 주소가 이전되어 주소가 같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주소를 같이 한 것으로 보고 해당 기간을 산정하여 반영
 - **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가축사육업 허가 등으로 농업인 확인이 가능한 농업인
- 사업대상자 선정 후 매매, 임차 등으로 해당농장의 축산업 허가증을 양도받은 자가 본 사업을 지속하고자 할 경우 승계 가능

5. 이행점검 단계(6~10월)



① 이행점검 계획 수립 축산환경관리원

- 축산환경관리원은 사업대상자 현황을 확인한 후 지역별 이행활동 신청 상황을 고려하여 이행점검 계획*(참고 3)을 수립 후 농식품부 보고
 - * 점검 대상지 현황(사육두수, 연간 이행계획 등), 현장 이행점검 일정 등
- 필요시 축산환경관리원은 시·도에 사업대상자 현황 등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② 이행점검 실시 축산환경관리원 지자체

- (점검대상)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사업대상자(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점검시기) 서면점검은 이행점검 기간 내 수시로 실시하고, 현장점검은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점검시기 조정 적용
- (점검내용) 증빙서류 및 현장점검을 통한 활동 이행 여부 점검
- (점검방법) 이행점검 시스템을 통한 증빙자료 점검
 - (서면점검) 신청인이 모바일 웹으로 제출한 활동사진, 구입증빙 서류 등 점검
 - * 서면점검 대상 농가의 이행증빙 서류의 제출여부 및 적정성 등
 - (현장점검) 부분급여 농가, 증빙서류 미흡농가* 등 30% 이내 무작위 선정, 현장점검 시행([별지 제9호서식])
 - * 미흡농가 예시: 부분급여 증명이 불명확한 경우, 구매내역서 등 증빙자료 제출이 적은 경우 등
- ** 지자체는 농가방문 사전 협조요청 시, 필요에 따라 현장 동행 등에 협조해야 함
- (점검안내) 현장점검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사전에 안내
 - * 현장점검 전 조사목적, 일시, 장소에 현장점검자 성명과 직위, 조사범위와 내용 등을 포함하여 조사대상자에게 통지(문자 등)

《 이행정검 시기 및 증빙서류 》

분야	활동	이행정검 시기		이행증빙 서류
		증빙제출	현장점검	
축산	저메탄사료 급이(소)	수시(월 1회 권장) (6월~10월)	하반기(10월까지)	구입증빙 서류, 제품 및 활동사진 등
	질소저감사료 급이(돼지)	수시(월 1회 권장) (6월~10월)	하반기(10월까지)	구입증빙 서류, 제품 및 활동사진 등

※ 10월까지 이행증빙서류 및 이행활동사진 필히 입력

《 이행정검을 위한 신청인 유의사항 》

- 사업참여자는 이행증빙서류를 월 1회 수시 입력 권장
 - 단, 월 1회 증빙서류를 입력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10월까지 월별 이행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10월내에도 미입력시 활동비 지급 감액 처리

③ 이행정검 결과 통지 축산환경관리원 지자체

- (지자체 통지) 축산환경관리원은 이행정검 결과를 취합하여 AgriX시스템을 통해 시·군에 통지([별지 제10호서식])
- (신청인 통지) 시·군은 이행정검 결과를 통지받은 후 신청인에게 통지

④ 이의신청 농업인·법인 지자체 축산환경관리원

- (이의신청) 이행정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농업인·농업법인의 대표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명자료([별지 제11호서식])를 첨부하여 시·군에 이의신청
 - * 기간 내에 소명이 없는 경우 이행정검 기관은 처분의 내용을 적용
- (재조사 요청) 시·군은 농업인·농업법인 대표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3일 이내에 AgriX시스템으로 축산환경관리원에 재조사 및 소명자료 검토요청
- (재조사 시행) 축산환경관리원은 AgriX시스템으로 재조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농업인·농업법인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AgriX시스템에 입력 후 해당 시·군에 재전송
- (결과통보) 시·군은 재조사 결과를 3일 이내에 농업인·농업법인에 결과 통보

⑤ 이행점검 결과처리 및 보고 **지자체** **축산환경관리원**

○ (최종 결과 보고) 축산환경관리원은 이행점검 결과를 확정하여 농식품부 보고 (11.30일) 및 최종 이행점검 결과 AgriX시스템 전산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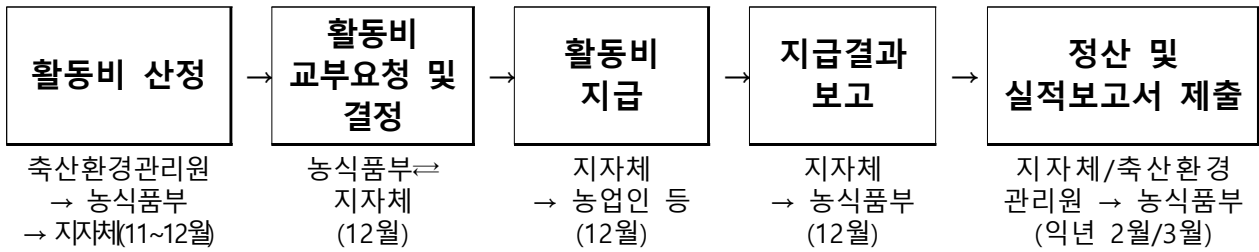
* 이행점검 결과는 조사대상 범위(축종, 사육두수 등), 부적합 내용 등을 포함

《 활동별 이행 절차 》

구분	활동별 시기	처리기한	비고
이행점검 마감	10.31	-	서면 및 현장점검
점검결과 통보	11.1 ~ 11.7	7일 이내	축산환경관리원 → 지자체 → 사업대상자
이의신청	11.8 ~ 11.17	10일 이내	신청인 → 지자체 → 축산환경관리원 * 지자체 AgriX시스템 재조사 요청
재조사	11.18 ~ 11.27	10일 이내	축산환경관리원 * 점검기관 AgriX시스템 결과 입력
재조사 결과통보	11.28 ~ 11.30	3일 이내	축산환경관리원 → 지자체 → 이의신청인
이행점검 결과보고	~11.30	-	축산환경관리원 → 농식품부

* 활동별 시기 및 처리기한은 운영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활동비 지급 및 정산 단계(11~12월)



① 지급액 산정 축산환경관리원

- 산출기준
 - 신청 가축두수에 축종·사료별(한육우·젖소: 저메탄사료 / 돼지: 질소저감사료) 적정 급이량 및 이행기간을 곱하여 산출하되 감액기준을 반영하여 산출
 - 감액기준
 -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증빙여부, 다음 감액기준(참고 4)을 적용하여 활동비를 최종 산출*
- * 신청두수(두) × 지급단가(원/두/년) × 이행기간(년) × 감액기준(사료 실 구매량, 증빙정도 등)

② 자금요청 및 교부결정 농식품부 지자체

- (자금요청) 시·도는 축산환경관리원의 활동비 산정결과(지급대상자, 소요자금 등)를 검토 후 활동비를 확정하여 농식품부에 자금요청
- (교부결정) 농식품부는 시·도의 자금요청 및 시스템 통계를 토대로 교부결정 통지
- (전산작업) 시·도는 자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e-호조 및 e-나라도움 시스템 맵핑
- (자금교부) 농식품부는 시·도에 자금교부, 시·도는 즉시 시·군에 전금

③ 활동비 지급 지자체

- (지급시기) 12월
- 시·군은 시·도에서 자금을 교부받아 신속히 지급대상자 계좌에 입금
 - 사업대상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프로그램(축산)”을 명기하여 지급
- 통장입금 시 지급대상자와 예금주를 필히 확인한 후 같은 사람일 경우 입금
- 지급금액 확정부터 지급 전까지 승계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승계 대상자에게 지급할 경우 우선 승계자의 계좌로 입금하고 향후 등록정보 수정

④ 지급결과 보고 지자체

- 시·도는 지원금 지급결과를 서면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12월 말까지)

7. 사후관리 단계

- ☑ 농입인 등이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참여하며 행정기관을 속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비를 수령한 경우
- ☑ 아울러, 준수사항 위반, 이행점검 미이행, 자격요건 미준수 등이 확인된 경우,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에서 제외

① 부정수급 관리체계 농식품부 지자체 축산환경관리원

- 부정수급 방지체계는 「23년 기본형 공익직불 사업시행지침」의 **“7. 부정수급 방지”, “8. 부정수급, 착오 등, 감액지급 등 행정처분”** 근거를 기본으로 관리함
-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본형 공익직불제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을 집중관리하고 정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지도·점검 등 부정수급 감시체계 확립
- * 사육두수, 적정 사료 공급 여부, 사료 급여 방식 등에 대한 검증 및 현장 조사 강화

② 부정수급 관리 농식품부 지자체 축산환경관리원

- (신고센터 운영) 축산환경관리원 및 지자체는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내용에 대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조사
 - 시·군의 “부당수령 신고센터” 방문을 통한 서면 신고 또는 축산환경관리원의 부정수급 신고 콜센터(참고 5) 등을 통한 구두 신고*
- * 구두신고 시 확인사항: 부당수령자 성명, 축사주소, 위반사항, 신고인 성명 및 연락처
- (부정수급 조사) 부정수급에 대한 상시 관리를 위해 지자체·축산환경관리원은 자체 조사반을 편성·운영
 - 사전 및 현장조사는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과정으로 농업인·농업법인 대표의 소명, 사실 여부에 대한 증빙 과정으로 업무처리
- * 지자체가 1차 현장조사 실시 후 추가 현장조사 필요 시 축산환경관리원이 현장 확인
- (부정수급 환수) 부정수급 관리를 통해 불가피하게 환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부당수령자 현황 및 수령금 환수 실적을 보고하고 회수 조치된 활동비는 국고(공익증진직불기금) 세입금으로 반납조치

1. 사업성과 평가

① 연간 탄소중립 기여도 평가

- 기 개발된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방식을 토대로 연간 이행활동별 온실가스 총 감축량 산정하며, 사업 중에 배출계수 변동사항이 있으면 가장 최근 국가에서 발표된 자료를 반영하여 산정
- 현장점검 시 사료 및 분뇨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분석기관*에 의뢰, 검사결과를 토대로 실증효과 분석

* (사료분석) 「사료관리법」 제22조(사료검정기관 지정 등)에 따라 지정받은 검정기관
(분뇨분석)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별표6]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

② 연간 참여현황 분석

- 연간 농업인·농업법인 참여 수, 급이 두수 등 활동별 이행현황 특성을 분석하고 시범사업 시 파악된 문제들의 유형 분류 및 해결방안 검토
- 아울러, 축산부문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적으로 시행할 이행 활동이나 감축 효과를 제고 할 수 있는 방안 검토

2. 환류

- 연말 참여현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차년도 사업관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실적 성과를 분석하여 이행 활동 조정

참고 1 급이방식 및 사육두수별 신청두수 확인 예시

1 한육우

농가	신청정보			이력제 정보		최종 신청 두수	비고
	급이방식	대상	신청 두수	성별	사육두수 (6개월령* 이상)		
A	일괄급이	비육우	200	수	180	180	신청두수를 이력제 기준으로 정정하여 접수하거나 이력정보 수정 요구
	⇒ 신청두수가 사육두수를 초과하였으므로 이력제상 사육두수 기준 접수						
B	일괄급이	번식우	40	암	50	50	신청두수를 이력제 기준으로 정정하여 접수
		비육우	80	수	100	100	
⇒ 일괄급이에 따라 이력제상 사육두수 전체를 신청하여야 함							
C	부분급이	번식우	40	암	50	40	신청두수로 접수
		비육우	80	수	100	80	
⇒ 부분급이가 가능할 경우 사육두수의 일부만 신청 가능							
D	부분급이	번식우	40	암	30	30 ↓	이력제 두수 범위 이내로 정정하여 접수
		비육우	0	수	50	50 ↓	
⇒ (번식우) 신청두수가 사육두수를 초과하였으므로 부분급이가 가능할 경우 이력제 두수 범위 이내에서 신청하여야 함 ⇒ (비육우) 비육우 참여는 필수이므로 부분급이가 가능할 경우 이력제 두수 범위 이내에서 신청하여야 함							
E	부분급이	비육우	50	수	0두	0	-
	⇒ 이력제 정보에 사육두수가 없으므로 신청 불가						

* 「축산법」에 따라 한육우는 6개월령 이상을 비육우, 번식우로 함

2 젖소

○ 한육우와 동일한 방식 적용(축산물 이력제 상 '젖소' 구분). 단 착유우는 12개월령 이상으로 함

3 돼지

농가	신청정보			가축재해보험 정보	구간별 사육두수 추정치*		최종 신청 두수	비고
	급이방식	대상	신청 두수		사육두수	대상		
A	일괄급여	모든	200	1,000	모든	100	100	사육두수 추정치로 정정하여 접수
		비육 구간 (이유돈~ 비육돈)	800		비육 구간 (이유돈~ 비육돈)	900	900	
⇒ (모든) 신청두수가 사육두수 추정치를 초과하였으므로 사육두수 추정치로 접수 ⇒ (비육구간) 일괄급여가 원칙이므로 사육두수 추정치 전체를 신청하여야 함								
B	부분급여	모든	50	1,000	모든	100	50	신청두수로 접수
		비육 구간 (이유돈~ 비육돈)	400		비육 구간 (이유돈~ 비육돈)	900	400	
⇒ 부분급이가 가능할 경우 구간별 사육두수 추정치의 일부만 신청 가능								
C	일괄급여	비육 구간 (이유돈~ 비육돈)	200	400	비육 구간 (이유돈~ 비육돈)	400	400	실제 사육 두수로 정정하여 접수
		⇒ 가축재해보험상 사육두수 전체를 비육돈으로 산정. 일괄급여 원칙에 따라 재해보험 사육두수 전체를 신청하여야 함						
D	부분급여	비육 구간 (이유돈~ 비육돈)	200	400	비육 구간 (이유돈~ 비육돈)	400	200	신청두수 기준으로 접수
		⇒ 가축재해보험상 사육두수 전체를 비육돈으로 산정.부분급여가 가능할 경우 사육두수 일부만 신청 가능						

* 모든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일괄사육 농장의 구간별 사육두수는 **모든 : 비육구간(이유돈+육성돈 +비육돈) = 1 : 9** 로 산출. 비육구간만 신청할 경우 사육두수 전체를 비육구간으로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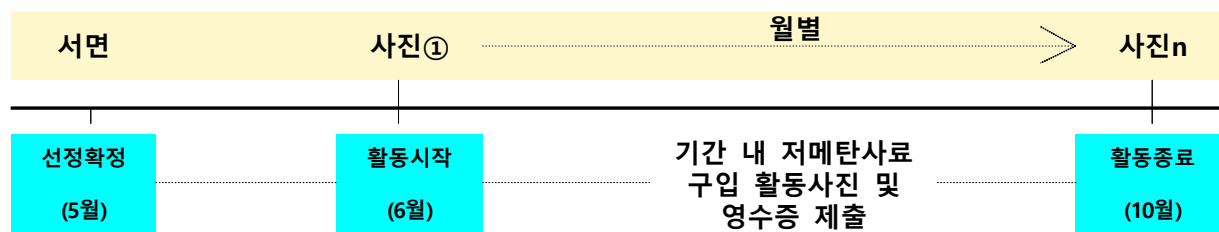
《 신청두수 확인 시 유의사항 》

- **조회되는 사육두수에 해당 구간은 부분급여 선택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청 원칙**
예) 한우 6개월령 이상(비육우)이 100두일 경우, 100두 전체 급이
- 부분급여가 아님에도 일부 두수만 신청할 경우 접수 당시 정정을 요구하고, 차후 일괄급여 적용 정도(사료 실구매량)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액 산정

참고 2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이행활동 서면 증빙

1 저메탄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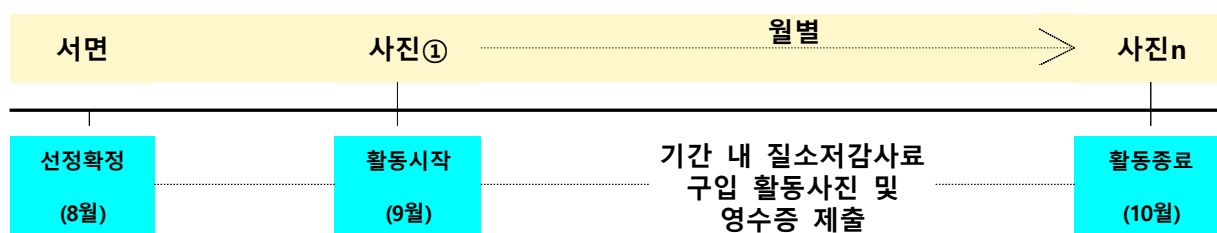
※ 저메탄사료 급여 이행점검 모식도



- (증빙방법) 해당 농업인은 휴대전화 웹(문자 링크)을 활용하여 활동 증빙자료*를 전송
 - * 증빙자료 업로드 항목: ①구매내역서(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구입영수증 등) ②사료
급이 축사 사진 ③사료 보관·활동 사진
- (활동증빙 인정기준) 구입증빙서류 및 월별 사료 구매·급이 확인이 가능한 서류·사진
 - * [구매내역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구입영수증 등으로 사료 제품명과 구매량이
필수로 명시되어야 함 (※ 이행점검 기간 내 최소 1회 필수 제출, 미제출시 미지급)
 - ** [활동사진 인정기준] 급이 장소가 확인 가능하도록 사료 급이 투입장소, 축사 사진 등

2 질소저감사료

※ 질소저감사료 급여 이행점검 모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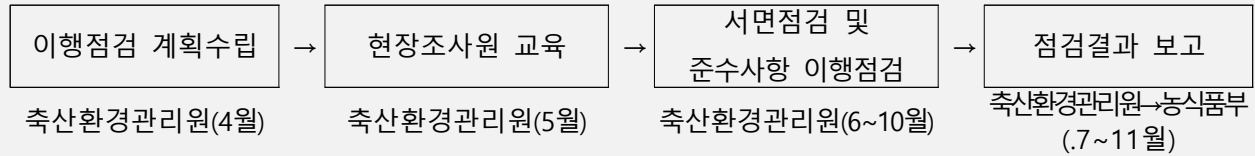


- (증빙방법) 해당 농업인은 휴대전화 웹(문자 링크)을 활용하여 활동 증빙자료*를 전송
 - * 증빙자료 업로드 항목: ①구매내역서(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구입영수증 등) ②사료
급이 축사 사진 ③사료 보관·활동 사진
- (활동증빙 인정기준) 구입증빙서류 및 월별 사료 구매·급이 확인이 가능한 서류·사진
 - * [구매내역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구입영수증 등으로 사료 제품명과 구매량이
필수로 명시되어야 함 (※ 이행점검 기간 내 최소 1회 필수 제출, 미제출시 미지급)
 - ** [활동사진 인정기준] 급이 장소가 확인 가능하도록 사료 급이 투입장소, 축사 사진 등

참고 3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이행점검 계획

☑ 축산환경관리원은 농업인·농업법인의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각 활동별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서면점검 및 현장 이행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이행점검 계획(안) 》



- ① **(점검계획 수립)** 농식품부 지침(가이드라인)에 따라 축산환경관리원은 사업대상자에 대한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준수사항 이행점검 추진계획 수립(4월)
 - 참여 농가의 준수사항 실천력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 이행점검 프로세스 마련, 현장조사원·업무 담당자 교육 등 추진
- ② **(현장조사원* 교육)**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위하여 현장조사원을 사전에 모집하여 교육 실시
 - * 축산환경관리원, 저탄소 축산물 인증 심사원, 축산환경컨설턴트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자
- ③ **(준수사항 이행점검)** 축산환경관리원은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자를 대상으로 이행점검 추진(하반기 10월까지)
 - 일반적인 준수사항(구입증빙 서류 등)은 AgriX시스템을 통해 점검하고, 대상자 중 증빙 미흡 농가 대상 30% 이내 추출하여 현장점검 실시
 - *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현장점검 대상자 중 필요에 따라 사료 등 시료채취 및 분석 실시
 - **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사 내부를 제외하고, 농장 확인을 위한 진입 거부로 현장점검이 어려운 경우, 점검거부로 간주하여 활동비 지원 제외 처리(단,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 상황은 제외)

<현장점검 시 시료채취 및 분석>

- 현장조사원이 등록 대상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점검표에 따라 현장점검 실시
- 현장점검 시 시료(저메탄, 질소저감사료 등)를 채취하여 공인분석기관에 의뢰
 - 대상 농가에서 급이하는 사료를 측정하기 위해 농가별·사육단계별 사료(500g×2) 채취
 - 돼지농가의 경우, 배출시설에서 분뇨(500g×2)를 채취하여 배출량 저감 효과 분석(TN) 실시
 - * 채취위치: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점검자가 결정하여 시료 채취
- 시료 채취 시 점검자, 점검대상자, 시·도(시·군) 담당자 입회하에 채취
 - ※ 시료 분석결과는 사업효과 점검을 위한 자료이며 분석결과는 제공하지 않음

④ **(점검결과 보고)** 축산환경관리원은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자에 대한 이행점검 (AgriX시스템, 현장점검 등)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11월)

* 농식품부는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검토 후 이행 부적합자 발생 시 지자체에 통지하여 조치

참고 4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활동비 감액기준

1. 저메탄사료 급이

- (산출기준) 사료 실 구매량, 사진증빙에 따라 감액 기준 설정

구입 증빙서류	지급액 산정
X	구입증빙서류 제출 재요청, 미제출시 지급 제외 이의 신청기간(11.8~11.17)에 사후증빙이 가능할 경우 사료 구매량 확인 후 감액결정
○	[산출식] 지급액 × 사료 실구매량 비율별 지급률 × 사진증빙 여부 = 지급액 × (총 사료 구매량 / 권장 사료 구매량*)별 지급률 × 사진증빙여부** * 권장 사료 구매량: 신청두수 × 두당 사료 급이량(저메탄사료 업체·제품별 권장 급이량 등) * 총 사료 구매량/권장 사료 구매량은 1을 초과할 수 없음 ** 이행기간 내 활동사진 미증빙 시 20% 감액

<사료실구매량 비율별 지급률>

사료구매량/ 권장 사료 구매량	50% 이하	51 ~ 60%	61 ~ 70%	71 ~ 80%	81 ~ 90%	91 ~ 100%
지급률	0%	60%	70%	80%	90%	100%

- (지급기준 예시) 신청 사육기간(6개월 기준) 중 저메탄사료 급이 활동률에 따른 지급액 예시

- (산출식) 지급단가(원/두) × 신청두수 × 이행기간(6개월 가정) × 감액 기준

지급 단가	신청 두수	사료 구매량	최소 사료구매량	사진증빙		인증 지급률	지급액
				구입증빙서류	활동사진		
25천원/두	600	640,000 kg	637,200 kg	○ (100%)	○ (100%)	100%	7,500천원
25천원/두	600	590,000 kg	637,200 kg	○ (100%)	X (80%)	80%	6,000천원
25천원/두	600	550,000 kg	637,200 kg	○ (90%)	○ (100%)	90%	6,750천원

2. 질소저감사료 급이

○ (산출기준) 사료 실 구매량, 사진증빙에 따라 감액 기준 설정

구입 증빙서류	지급액 산정
X	구입증빙서류 제출 재요청, 미제출시 지급 제외 이의 신청기간(11.8~11.17)에 사후증빙이 가능할 경우 사료 구매량 확인 후 감액결정
O	[산출식] 지급액 × 사료 실구매량 비율별 지급률 × 사진증빙 여부 = 지급액 × (총 사료 구매량 / 권장 사료 구매량*)별 지급률 × 사진증빙여부** * 권장 사료 구매량: 신청두수 × 두당 사료 급이량(질소저감사료 업체제품별 권장 급이량 등) * 총 사료 구매량/권장 사료 구매량은 1을 초과할 수 없음 ** 이행기간 내 활동사진 미증빙 시 20% 감액

<사료실구매량 비율별 지급률>

사료구매량/ 권장 사료 구매량	50% 이하	51 ~ 60%	61 ~ 70%	71 ~ 80%	81 ~ 90%	91 ~ 100%
지급률	0%	60%	70%	80%	90%	100%

○ (지급기준 예시) 신청 사육기간(6개월 기준) 중 질소저감사료 급이 활동률에 따른 지급액 예시

- (산출식) 지급단가(원/두) × 신청두수 × 이행기간(6개월 가정) × 감액 기준

지급 단가	신청 두수	사료 구매량	최소 사료구매량	사진증빙		인증 지급률	지급액
				구입증빙서류	활동사진		
5천원/두	3,000	400,000 kg	342,000 kg	O (100%)	O (100%)	100%	2,500천원
5천원/두	3,000	300,000 kg	342,000 kg	O (90%)	X (80%)	72%	1,800천원
5천원/두	3,000	250,000 kg	342,000 kg	O (80%)	O (100%)	80%	2,000천원

참고 5 부정수급 신고센터

구 분	기 관 명	전화번호	비 고
1	국민권익위원회	110	정부민원안내
2	축산환경관리원	044-550-5000	축산분야
3	경기도청	031-8008-2580	보조금 부정수급
4	강원특별자치도청	033-249-3444	보조금 부정수급
5	충청북도청	043-220-2945	보조금 부정수급
6	충청남도청	041-635-2123	예산낭비 신고센터
7	전라북도청	063-280-2260	예산낭비 신고센터
8	전라남도청	061-286-2528	보조금 부정수급
9	경상북도청	054-880-2154	예산낭비 신고센터
10	경상남도청	055-211-2155	보조금 부정수급
11	제주특별자치도청	064-710-2324	예산낭비 신고센터

참고 6 신청 시 제출서류(* 행정정보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구 분	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	▶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감액기준 동의서	▶ 감액기준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3. 가축사육업 허가증 * 전산 확인 가능 시 미 제출 가능	▶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허가한 허가증(사본) * 「축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 등록증은 인정되지 않음
4. 가축재해보험 보험증권 * 돼지만 해당	▶ 가축사육두수가 명시된 가축재해보험 가입 시 받은 보험증권(사본)
5. 전년도 사료구매 내역서	▶ 사육단계별 전년도 사료 구매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매 내역서 등
6. 후계영농인 [승계 사유 발생시]	※ 후계영농인은 우선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 ▶ 승계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농장에서 근무한 경력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직전(지급) 연도 기본직불 등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Ⅱ. 축산 분야 별지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대상자 모집 계획(00시·도)

추진배경

- (예시) 국가 NDC 목표 달성에 기여 가능한 저탄소 영농활동 지원 통해 00 시·도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 조성

주요 협의 내용

- 시·도 사업물량 배분방안
- 지자체(시·군) 협조방안
- 기타 협의시 논의된 내용

향후 추진일정

-

※ 기타 기재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기재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서(축산)

※ 신청인(농업인·법인의 대표)이 직접 확인·작성하며, 이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2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 기간	90일
------	------	----------	-----

신청인 (대표자) 정보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휴대전화: - -)			
	주 소	<i>우편물 수령을 위한 사무실 또는 자택주소 기재</i>							
사업 참여자 정보	농장명 (법인명)								
	농장 주소 (법인주소)								
	가축사육업 허가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축종 (한우/육우/젖소/돼지)				
	사육두수				사육면적				
신청 내역	축종	세부축종(해당 축종 ○표시)	신청 두수	급여방식(해당 방식 ○표시)					
	한육우 (6개월이상)	비육우(필수)			일괄급여				
		번식우							
	젖소(12개월이상)	착유우			부분급여				
	돼지	비육돈(필수)							
모돈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 비육돈: 이유돈, 육성돈, 비육돈 총칭

* 사육두수는 담당공무원이 축산물이력제(소), 가축재해보험(돼지) 확인 후 작성하며, 신청인이 작성한 세부축종, 급여방식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신청두수 작성(음영처리 부분)

위와 같이 탄소중립 프로그램(축산) 시범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input type="checkbox"/> 가축사육업 허가증(사본) <input type="checkbox"/> 감액기준 동의서 <input type="checkbox"/> 전년도 사료구매 내역서 <input type="checkbox"/> (돼지) 가축재해보험 보험증권 <input type="checkbox"/> (부분급여 신청시) 부분급여 증빙자료(사진 등)	수수료 없음
제출 및 처리기관	농업인·법인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은 탄소중립프로그램 담당 직원이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지급대상자 요건 및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 중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직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축산법 시행령」 제14의5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정보 활용 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이력정보를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탄소중립프로그램 활동비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된 경영주인 농업인, 경영주 외의 농업인, 그 외 가족 구성원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개인정보, 사육정보 등을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합니다)와 중앙회의 자회사(이하 "농업협동조합"이라 합니다)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농업·농촌 사회 안전망 지원, 농산물의 안전생산 및 유통관리, 융자·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공익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프로그램 관련 각종 안내 사항, 그 밖의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등록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및 그 밖의 농업·농촌 관련 융자·보조금(활동비 포함)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활동비 포함) 등의 부정·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자료 활용 및 유사 사업과 본 사업의 동일 활동 참여시 활동비가 미지급 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축산업 허가가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하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축산환경관리원은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활동비 포함) 등 수령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의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탄소중립 프로그램 활동비 지급,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보조금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에 대한 재심사 신청서

구분	<input type="checkbox"/> 한육우 <input type="checkbox"/> 젖소 <input type="checkbox"/> 돼지 ※ <input type="checkbox"/> 해당란에 "√" 표시					
신청인	성 명 (법인명)		농장명		연락처	
	주 소					
이의신청 내용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 결과에 대해 위와 같이 재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증명 서류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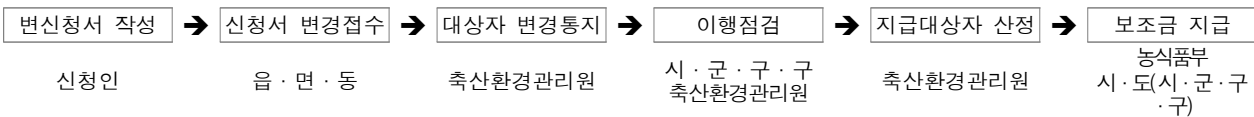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변경신고서([]한육우, []젓소, []돼지)

①신청인	성명 (법인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가축사육업 허가번호	
	주소		연락처	
②신청 변경사항: () 사업대상자, () 신청두수, () 사료급여				
	구분	당초	변경	변경일자
사업대상자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신청두수	한육우(마리)			
	젓소(마리)			
	돼지(마리)			
사료급여	급여방식			
* 사업대상자 등 변경에 따른 신청 사육두수 대비 변경내용은 별지로 작성 가능				
③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내용(사업대상자, 신청두수, 사료급여)이 변경되었음을 신고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축산환경관리원장 귀하			확인	시·군·구청장
구비서류	1. 사업대상자 승계 관련 서류(사업대상자 변경에 한함)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명, 대표자 등 변경에 한함) 3. 통장사본(입금계좌 변경에 한함)			

작성 방법

- ① 신청인: 탄소중립 프로그램 변경 신청인(법인 포함)의 인적사항을 기재
 - *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동시 기재
- ② 신청 변경사항
 - 사업대상자: 당초 신청한 농업인의 사망, 축사의 매도·임대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위 일체를 승계한 경우
 - 가축두수: 사업신청 후 사육두수가 변경된 경우
- ③ 입금계좌: 신청내용 변경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할 농업인(법인)의 계좌를 기재(사업대상자와 일치해야함)

처리 절차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은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담당 직원이 탄소중립 프로그램 지급대상 자격 및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지원금 지급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담당 직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탄소중립 프로그램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전업농등 육성·지원, 농림축산식품부의 맞춤형 농업정책 지원, 농업정책 안내 서비스, 지방 농업정책 지원, 농업·농촌 사회 안정망 지원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 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및 그 밖에 농업정책 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약정이 종료 또는 해제(해지)되는 날까지 유효하며, 약정 종료 또는 해제(해지)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탄소중립 프로그램 지원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용자·보조금의 지원이나 맞춤형 농업정책 지원, 농업정책 안내 서비스 제공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포기신청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농장명		연락처	
	주소			
<사업 선정 내용>				
구분	<input type="checkbox"/> 한육우 <input type="checkbox"/> 젓소 <input type="checkbox"/> 돼지			
신청두수		급여방식		
사육면적(m ²)				
사업 포기 이유				
본 사업자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선정이 확정된 후 사업수행을 선정내용으로 이행할 수 없는 사유발생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사업포기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3년간 동일 사업신청이 불가한 것 을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4. 신청인 확인(필요시)

○ 신청 농가의 현장점검 결과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조사일자:	신청인	(인) 연락처:

<사 진>

* 현지 조사표 하단 또는 뒷면에 부착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이행점검 결과통지서

([] 한육우, [] 젖소, [] 돼지)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가축사육업 허가번호		연락처	
주소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축산)

농장 소재지	신청내역			조사결과 이행활동			지급 예상액 (원)
	한육우	젖소	돼지	저메탄사료 급이	질소저감 사료 급이	시료채취 여부	
	(두)	(두)	(두)	(O,X)	(O,X)	(O,X)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실시한 탄소중립 프로그램 이행점검 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행점검 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동봉한 이의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를 축사 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결과통지서에는 조사결과 부적합 축사만 표출됩니다.

년 월 일

축산환경관리원장

직인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이행점검 결과 이의신청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농장명		연락처	
	주소			

2.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 사유 기재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이행점검 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이행점검결과 통지서

2.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이행점검 재조사 결과통지서

([] 한육우, [] 젓소, [] 돼지)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가축사육업 허가번호		연락처	
주소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농장 소재지	신청내역			조사결과			지급 예상액 (원)
				이행활동			
	한육우 (두)	젓소 (두)	돼지 (두)	저메탄사료 급이 (O,X)	질소저감 사료 급이 (O,X)	시료채취 여부 (O,X)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실시한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이행점검 재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결과통지서에는 재조사 축사만 표출됩니다.

년 월 일

축산환경관리원장 직인

※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접수, 보조금 지급 등을 수행하는 시군구 업무담당자,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내부 결재를 받아 1년간 보관

보안서약서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접수, 지원금 지급 등의 업무를 위하여 농업인, 이·통장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직무상 정보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으며, 보존기간 경과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파기 또는 소각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기관명:

직 급:

성 명:

(인)

시·군·구청장 (귀하)

관련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동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동법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